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7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이상욱,
이종환, 이효진, 홍국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2026년 3월 31일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수목원” 정의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실시를 추가함(안 제2조 제1호).
- 나.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(안 제4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전시하고”를 “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·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<u>전시하고</u>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전시하고</u> <u>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</u> ----- -----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업)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사업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 및 전시</u>	2. <u>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·전시 및</u> <u>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</u>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수목원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'교육' 업무를 조례상의 정의(안 제2조) 및 사업(안 제4조)에 명시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입법재정지원1팀장	김 선 희
추 계 분 석 관	김 경 명

☎ 02-2180-7955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